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등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구직자취업촉진법’)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등 처분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,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10. 7.

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등 처분 통지 공시송달
2. 근 거: 구직자취업촉진법 제12조제4항 및 제29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 (생년월일)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송달 불능 사유
			처분 사유	처분의 내용	
정O우 (95.04.25.)	부산진구 동평로 414 (이하생략)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등 처분 알림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전화연락 및 출석 통지 하였으나,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한 상담일('26.6.15., '26.6.22.)에 방문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여 구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	①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② 3년간('26. 9. 15.~'29. 9. 14.) 재참여 제한	폐문 부재

4. 공고기간: 2026. 10. 7. ~ 2026. 10. 21.(15일간)
5. 의견제출방법: 공고기간 내 직접 방문(부산고용센터 2층 국민취업지원과) 또는 팩스(051-719-4513)
6.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국민취업지원과 최미란(Tel. 051-860-1908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